'광주 사회적경제 배리어프리 영화제' 개최

내일부터 14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서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

총 7편 상영 예정…다양한 문화행사도

광주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3회 광주 사회적경제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개최한다.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장벽이 없는 세상을 뜻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 '영화'를 결합해 신체적 핸디캡과 언어적 장벽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다.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인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을 시작으로 엄마의 공책, 일 포스티노, 천국의 속삭임, 족구왕, 마당을 나온 암탉, 미라클 밸리에(폐막작) 등 총 7편이 상영된다.

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을 넣어 상영하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안대를 착용하고 영화를 보는 장애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화제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공공기관과 일반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시하고 우수사회공헌 활동을 시상하는 '사회적경제 사회공헌 홍보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해 만든 사회공헌 모델인 '광주 소셜굿즈 아이디어 쇼케이스' 시상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사회적기업이 함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눈감고 영화 본 판사들'…장애인들도 극장서 최신영화 볼 날 올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처음으로 눈을 감고 영화를 봤는데, 라디오랑 비슷하네요."

시 · 청각 장애인들도 최신영화를 영화관에서 함께 볼 수 있을까. 9일 오후 수십명의 사람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극장에 모였다. 이날은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를 관람하고, 대형 영화관에 이를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날이었다.

시 · 청각 장애인의 영화 차별구제 민사소송에 대한 첫 현장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이 법정이 아닌 밖에서 만난 이유는 특수기기 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가격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소송을 낸 영화관은 CGV, 메가박스 등 대형 극장이지만, 관람 극장은 평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를 자주 틀어주던 소규모 극장이 선택됐다.

서울고법 재판부와 관계자들이 9일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서 현장 검증

시 · 청각 장애인들, 3년째 영화사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

베리어프리는 시 · 청각장애인들이 차별없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음성해설, 자막 등에 대한 설명을 성우가 덧입히거나 자막에 추가로 붙이는 '개방형 방식'과 스마트 안경, 스마트폰 앱 등을 사용하는 '폐쇄형 방식'이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 강남구 소재 이봄씨어터에서 재판부 3명과 원고 측 소송대리인, 피고 측 소송대리인 등 20명은 두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 영화 '밀정'을 관람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해당 앱을 내려받아 시행시키면 각자 필요에 따라 수화 등 화면해설과 자막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면 영화 스크린에 자막이 나오고, 이어폰을 꽂으면 화면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이날은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자막과 오디오 핑거프린팅(Audio Fingerprinting) 기술로 음성을 인식해 화면을 해설하는 영화관람 보조시스템이 사용됐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시 · 청각 장애인들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 "화면해설과 자막, FM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15년 4월 11일부터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은 장애인이 문화 ·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CJ CGV 등 영화사 측은 아직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증 후 재판부는 "눈과 귀가 열린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면 설명을 들으니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장애인 복지 사업을 개인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에 신설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019년 기준 배출 인원이 2770명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지도자 배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컸다.

'연계취득 절차'란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 응시생이 보다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비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는 '연계취득 절차'가 마련돼 있었으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존의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동일한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도 연계취득 절차가 신설돼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①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1과목(특수체육론)으로, ② 실기 · 구술 후 ③ 연수시간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간소화한다.

뉴스1